Sunshine GWANGYANG

광 양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 보

제46호 2026. 11. 18.(수)

행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예고 제2026-384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칙안 행정예고 ····· 1

고 시

광양시 고시 제2026-293호 — 광양시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제1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22
광양시 고시 제2026-295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 25
광양시 고시 제2026-296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 26
광양시 고시 제2026-297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 27
광양시 고시 제2026-298호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 28

공 고

광양시 공고 제2026-2425호 —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 ····· 30
광양시 공고 제2026-2434호 —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 ····· 31

회람										

▶ 발행 : 광양시 ▶ 편집 : 홍보소통실 (☎797-2713, 행정27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예고 제2026-384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칙안 행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11월 16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장

1. 자치법규(2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칙안

2. 제정이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사고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조사 대상 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위원단 및 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16조까지)

다. 사고 현장조사 및 원인 분석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

라.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 및 제27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1

5. 의견제출

이 조례 및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공공재해예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 전자우편: youna1982@korea.kr

※ **의견제출(전자우편) 후 전화로 접수 확인 必**(☎062-613-3091)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칙안 1부.

2. (서식)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1부. 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칙안

1. 제안이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사고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조사 대상 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위원단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16조까지)

다. 사고 현장조사 및 원인 분석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

라.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 및 제27조)

3. 규칙안 :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규칙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사고조사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고조사”란 사고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의 수집·분석을 통한 사고의 원인 규명,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 유사사고의 방지 대책을 관계 기관에 권고 또는 건의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사고조사 보고서”란 사고 발생 원인과 분석, 결론 및 권고 등이 포함된 사고조사의 최종적인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사고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적용한다.

1. 부상자가 5명 이상 9명 이하인 인명피해
2.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피해 또는 인명피해

제2장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제4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통합특별시장

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사고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고조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정리
2. 사고의 경위 및 원인 조사
3.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보고
4.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 또는 건의
5. 그 밖에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의결에 부치는 사항

제5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의 구성) ① 통합특별시장은 신속한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사전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100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전문분야별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선정할 것

2. 사고가 발생한 시설물의 종류 및 피해 내용 등 사고 유형에 따른 전문분야를 참고하여 선정할 것

3.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출신 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성별 등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사고조사 중 전문분야의 변경 등 위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임기는 영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통합특별시장은 위원의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고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항에서 “당사자”라 한다)이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고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고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사고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사고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사고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통합특별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사고조사가 명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원회의 조사와 의사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조사계획 및 조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어떠한 금품·향응 등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시장이 해촉한다.

제12조(위원의 증표) ① 통합특별시장은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된 경우 및 위원을 사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회의 개최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

정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른다.

제15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사고조사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험·분석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정보의 공개 범위) 위원회는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해당 사고조사 또는 장래의 사고조사의 정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현장조사 및 보고서 작성

제17조(현장에서의 건강과 안전일반) 위원은 현장조사에 앞서 현장안전담당자 등으로부터 현장의 위험요인 및 잠재적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안전조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8조(사고 현장의 협조 의무)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관계자는 자료제출, 의견청취, 현장 출입 등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초기 조치와 현장보존 등)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고 현장에 대한 보존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복구나 잔해의 이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과정을 문서와 영상 등으로 기록하여 사고 원인 조사 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초기 현장조사) ① 초기 현장조사는 사고 범위와 상태를 평가하여 위원회 구

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고조사 준비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초기 현장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고 현장의 보존

2.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을 위한 자료의 제출

3. 그 밖에 위원회의 조사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초기 현장조사는 위원회의 현장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21조(사고조사 계획 수립) 위원장은 사고조사에 앞서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조사 계획에는 사고 상황과 현장 상태를 반영한 검사·시험 사항, 면담자 선정, 문서 수집 목록, 일정 계획, 예산 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2조(안전 대책) 시설물 관리주체의 책임자는 시설물사고 현장조사 진행 중에 작업원 또는 위원 등 인명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 전문가를 배치하여 구조물의 추가적인 붕괴 방지나 안전 보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23조(현장조사) ① 위원회는 사고 현장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사고 현장에 대한 관찰 조사

2. 잔해 처리 및 필요 잔해 보관

3. 시편 채집 및 공인 시험의 실시

4. 영상 자료의 기록

5. 목격자 확보 및 사고관계인 구두 진술

6. 현장 업무 절차 확인

7. 문서 조사

8.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사고관계인의 진술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사고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24조(조사 기한) 현장조사는 조사 계획 수립 후 그에 따라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고 발생 후 1주일 이내 착수하여 2개월 이내 종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연장이 가능하다.

제25조(원인 분석) 사고 원인에 대한 분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시험 자료와 관련 서류, 설계도서 등을 평가 분석하여 사고 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설을 수립할 것
2. 가설을 전개, 정리하면서 조사의 초점을 너무 조기에 좁혀서는 안 되며, 특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만 국한하지 않을 것
3. 가능성 있는 사고 원인 목록을 수립하여 확실한 증거로 배제될 때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하며, 조사 각 단계에서 새로운 가설에 대해서도 개방된 사고로 접근할 것
4. 세워진 가설의 증명을 위하여 시험 결과와 현장조사 자료를 토대로 가설의 적용 가능성과 적정성 여부를 공학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이론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을 것

제26조(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사고조사 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비밀 준수) ① 위원은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칙 [별지 제1호서식]

위 원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아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고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조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소속직장명

직위(급) 성명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증

	사 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증	제 호
소 속 직 급 성 명			
위 사람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

(뒷 면)

1.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2. 연락처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ooo실 ooo과
   (전화번호 : 02-0000-0000)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 장　　소 :
3. 참 석 자 :
   가. 출석위원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나. 간사 및 서기
   다. 배석자
4. 회의사항
   가. 회의 목적 및 심의·의결사항
   나. 회의대상
   다. 회의 내용(심의·의견 및 발언 내용 포함)
   라. 기타의견(심의 결과 등)
   마.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바. 그 밖의 사항

사고관계인 진술서

사고관계인 진술서			
일 반 사 항			
진술일시		진술장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휴대전화	
근 무 지		전화번호	
근무지주소			
사고 관련성			
진 술 내 용			
사고인지 장소		시간	
사고 당시 목격한 것, 들은 것 또는 행동한 것과 사고 발생 시 일어난 모든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히 기입할 것. 가능하다면 사고 원인에 대한 의견 표시도 가능함			
성명 : 0 0 0 (인)			

※ 사고사진, 개략도 별첨

○○○(시설) ○○(시설물)

사 고 조 사 보 고 서

20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위 원 장 : ○ ○ ○ 서명

조사위원 : ○ ○ ○ 서명

조사위원 : ○ ○ ○ 서명

조사위원 : ○ ○ ○ 서명

조사위원 : ○ ○ ○ 서명

조사위원 : ○ ○ ○ 서명

조사위원 : ○ ○ ○ 서명

조사위원 : ○ ○ ○ 서명

조사위원 : ○ ○ ○ 서명

조사위원 : ○ ○ ○ 서명

조사위원 : ○ ○ ○ 서명

조사위원 : ○ ○ ○ 서명

목 차

1. 개 요

2. 현장조사내용

3. 시험결과

4. 사고원인 분석

5. 결론

6. 현장조치결과, 권고 및 향후조치

7. 부록

---

1. 개 요

1) 목적

2) 현장정보
- ○ 시설물 관리주체 정보
- ○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내역
- ○ 시설물 시공자 및 설계자 내역
- ○ 시설물 설치공사 내역

3) 사고정보
- ○ 사고의 유형
- ○ 사고의 전개

4) 피해상황
- ○ 인적피해
- ○ 구조물손실
- ○ 장비손실
- ○ 긴급 응급복구
- ○ 피해금액

2. 현장조사내용
1) 사고조사위원 정보
2) 조사방법
3) 조사활동 상황
4)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체계
5) 문서의 점검
6) 현장점검사항

3. 시험결과
- ○ 위원회가 필요시 요청한 시험결과에 대한 결과 수록

4. 사고원인분석
- ○ 가설의 수립
- ○ 가설의 증명 및 사고원인 분석

5. 결론
- ○ 설계과정
- ○ 시공과정
- ○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과정

6. 현장조치결과, 권고 및 향후 조치

7. 부록

비 밀 준 수 서 약 서

직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성명 : ㅇ ㅇ ㅇ

상기 본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으로서 ㅇㅇㅇ 시설물 사고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

□ 주소 :

□ 전화번호 :

연번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1			
2			
3			
4			
5			

광양시 고시 제2026-293호

광양시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제1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광양시 중마동 마동유원지 일원의 광양시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제1호)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26년 11월 19일

광 양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간시설

◦유원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변경	1	마동유원지	유원지	광양시 중마로 410 일원	270,232	270,232	-	1991.10.12.	

◦유원지 조성계획(유원지 제3호) 결정(변경) 조서

구분	부지면적(㎡)			시 설 면 적(㎡)						비 고
				건 축 면 적			연 면 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총계	270,232	270,232	-	5,300	5,348	증)48	13,577	13,625	증)48	
시설소계	97,117	97,244	증)127	5,300	5,348	증)48	13,577	13,625	증)48	시설율 : 35.99%
유희시설	5,823	5,823	-	-	-	-	-	-	-	
운동시설	1,741	1,741	-	-	-	-	-	-	-	
휴양시설	8,154	8,154	-	-	-	-	-	-	-	
특수시설	38,992	39,119	증)127	4,635	4,683	증)48	12,753	12,801	증)48	
편익시설	1,945	1,945	-	-	-	-	-	-	-	
관리시설	40,462	40,462	-	665	665	-	824	824	-	
녹지	173,115	172,988	감)127	-	-	-	-	-	-	녹지율 : 64.01%

◦ 유원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	마동 유원지	·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 특수시설 부지면적 : 증)127㎡ – 시설면적 : 건축면적 증)48㎡, 연면적 증)48㎡	· 마동유원지 내 수소연료전지 설치를 통해 수소체험관 등에 전기 및 온수를 공급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자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부 지 면 적 (㎡)			시설면적(㎡)				비 고
			기정	변경	증 · 감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270,232	270,232	–	5,300	5,348	13,577	13,625	
시설소계			97,117	97,244	증)127	5,300	5,348	13,577	13,625	
유희 시설	소 계		5,823	5,823	–	–	–	–	–	
	1–1	에코포레스트	2,100	2,100	–	–	–	–	–	
	1	에코놀이터	2,231	2,231	–	–	–	–	–	
	1–3	나무놀이터	1,492	1,492	–	–	–	–	–	
운동 시설	소 계		1,741	1,741	–	–	–	–	–	
	2–1	나루터	720	720	–	–	–	–	–	
	2–2	운동마당	766	766	–	–	–	–	–	
	2–3	건강쉼터	255	255	–	–	–	–	–	
휴양 시설	소 계		8,154	8,154	–	–	–	–	–	
	3–1	잔디광장1	2,185	2,185	–	–	–	–	–	
	3–2	커뮤니티광장	151	151	–	–	–	–	–	
	3–3	패밀리팜	2,531	2,531	–	–	–	–	–	
	3–4	피크닉장1	2,816	2,816	–	–	–	–	–	
	3–5	피크닉장2	217	217	–	–	–	–	–	
	3–6	잔디광장2	200	200	–	–	–	–	–	
	3–7	포켓쉼터1	27	27	–	–	–	–	–	
	3–8	포켓쉼터2	27	27	–	–	–	–	–	
특수 시설	소 계		38,992	39,119	증)127	4,635	4,683	12,753	12,801	
	4–1	문화회관	8,090	8,217	증)127	4,635	4,683	12,753	12,801	
	4–2	수생식물군락지	6,181	6,181	–	–	–	–	–	
	4–3	야생화원	1,090	1,090	–	–	–	–	–	
	4–4	화목원	2,096	2,096	–	–	–	–	–	
	4–5	생태학습장	345	345	–	–	–	–	–	
	4–6	커뮤니티정원	1,044	1,044	–	–	–	–	–	
	4–7	환경교실	506	506	–	–	–	–	–	
	4–8	곰솔이야기숲	588	588	–	–	–	–	–	
	4–9	비오톱관찰원	881	881	–	–	–	–	–	
	4–10	생태전망대	84	84	–	–	–	–	–	
	4–11	초지식물교재원	1,702	1,702	–	–	–	–	–	
	4–12	버드나무학습원	1,398	1,398	–	–	–	–	–	
	4–13	수생식물원	1,036	1,036	–	–	–	–	–	
	4–14	자생수목이식원	2,661	2,661	–	–	–	–	–	
	4–15	생태경관숲원	991	991	–	–	–	–	–	
	4–16	소나무학습장	1,750	1,750	–	–	–	–	–	
	4–17	음악분수	6,547	6,547	–	–	–	–	–	
	4–18	숲속놀이터	690	690	–	–	–	–	–	
	4–19	조류전망대	36	36	–	–	–	–	–	
	4–20	습지진데크로드	146	146	–	–	–	–	–	
	4–21	계류시설	1,130	1,130	–	–	–	–	–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부 지 면 적 (㎡)			시설면적(㎡)				비 고
			기정	변경	증 · 감	건축면적		연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편익시설	소 계		1,945	1,945	-	-	-	-	-	
	5-1	전망스탠드	127	127	-	-	-	-	-	
	5-2	야외무대	84	84	-	-	-	-	-	
	5-3	관람석	298	298	-	-	-	-	-	
	5-4	에코건강놀이마당	806	806	-	-	-	-	-	
	5-5	환경정화쉼터	630	630	-	-	-	-	-	
관리시설	소 계		40,462	40,462	-	665	665	824	824	
	6-1	방문자센터	667	667	-	336	336	495	495	지상2층
	6-2	진입광장1	674	674	-	-	-	-	-	
	6-3	진입광장2	727	727	-	-	-	-	-	
	6-4	마둥광장	2,824	2,824	-	-	-	-	-	
	6-5	광장2	60	60	-	-	-	-	-	
	6-6	광장3	231	231	-	-	-	-	-	
	6-7	숲속광장1	69	69	-	-	-	-	-	
	6-8	숲속광장2	19	19	-	-	-	-	-	
	6-9	숲속광장3	19	19	-	-	-	-	-	
	6-10	숲속광장4	80	80	-	-	-	-	-	
	6-11	숲속광장5	67	67	-	-	-	-	-	
	6-12	숲속광장6	14	14	-	-	-	-	-	
	6-13	숲속광장7	68	68	-	-	-	-	-	
	6-14	분수대운영실	336	336	-	126	126	126	126	지상1층
	6-15	다목적광장1	0	0	-	-	-	-	-	
	6-16	다목적광장2	0	0	-	-	-	-	-	
	6-15	주차장1	4,090	4,090	-	-	-	-	-	
	6-16	주차장2	5,713	5,713	-	-	-	-	-	
	6-17	주차장3	2,390	2,390	-	-	-	-	-	
	6-18	주차장4	6,194	6,194	-	-	-	-	-	
	6-19	화장실1	58	58	-	42	42	42	42	
	6-20	화장실2	83	83	-	42	42	42	42	
	6-21	기계실	47	47	-	47	47	47	47	
	6-22	대기오염측정소	160	160	-	72	72	72	72	지상1층
		도로	15,872	15,872	-	-	-	-	-	
기타시설	소 계		173,115	172,988	-	-	-	-	-	
	7	녹지	110,830	110,703	감)127	-	-	-	-	
	8	수변	62,285	62,285	-	-	-	-	-	

2. 관계 도서 : 게재 생략(광양시청 공원과 비치)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공원과(☎061-797-47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고시 제2026-29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1월 18일

광 양 시 장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광양서천(지방하천)
점용자	주소	광양시 광양읍 남등길 6
	성명	광양읍사무소
점용지역	위치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598 외 4필지 일원
	면적	약 58.5㎡
점용목적		공작물 설치
점용내용		미세먼지 기상전광판 및 케이블 설치
점용기간		당초: 2022. 9. 26. ~ 2026. 12. 31. 연장: 2027. 1. 1. ~ 2031. 12. 31.

나. 관계도서는 광양시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건설과(☎061-797-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고시 제2026-29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1월 18일

광 양 시 장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광양서천(지방하천)
점용자	주소	광양시 광양읍 남등길 6
	성명	광양읍사무소
점용지역	위치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631 외 1필지 일원
	면적	약 21.3㎡
점용목적		공작물 설치
점용내용		미세먼지 기상전광판 및 케이블 설치
점용기간		당초: 2022. 9. 26. ~ 2026. 12. 31. 연장: 2027. 1. 1. ~ 2031. 12. 31.

나. 관계도서는 광양시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건설과(☎061-797-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고시 제2026-29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1월 18일

광 양 시 장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광양서천(지방하천)
점용자	주소	광양시 봉강면 성불로 ****
	성명	조○○
점용지역	위치	광양시 봉강면 조령리 886 번지 일원
	면적	약 330㎡
점용목적		토지의 점용
점용내용		식물의 식재
점용기간		당초: 2021. 9. 13. ~ 2026. 12. 31. 연장: 2027. 1. 1. ~ 2031. 12. 31.

나. 관계도서는 광양시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건설과(☎061-797-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고시 제 2026 - 298 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1. 18.

광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구 분	고 시 대 상	고시조서	비 고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 644외 1건	별지참조	
	아 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797-338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11. 18. 고시 후「도로명주소법」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고시 대상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계	건물번호 부여 2건					
1	건물번호부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 64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옥룡면 묵방길 27	20261118	20081001	행정리명에서 인용
2	건물번호부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205-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봉강면 해랑1길 11	20261118	20200603	사업명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9. 8.>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

공고 제2026-2425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8일

광 양 시 장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정○○			
	대표자 (성 명)	정○○	주소	전남 곡성군 곡성읍 곡고로 *** (******)	
소하천명		점동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광양시 광양읍 사곡리 369 외 1필지			
	면적	약 48㎡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당초: 2022. 1. 7. ~ 2026. 12. 31. 연장: 2027. 1. 1. ~ 2031. 12. 31.			
	목적 및 사유	공작물 설치(농사용 진출입로)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9. 8.>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

공고 제2026-2434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8일

광 양 시 장

<table>
<tr><td rowspan="2">시행자
(점용·사용자)</td><td>상호 및 명칭</td><td colspan="4">광양시장(건설과장)</td></tr>
<tr><td>대표자
(성 명)</td><td>광양시장(건설과장)</td><td>주소</td><td colspan="2">광양시 시청로 33(중동)</td></tr>
<tr><td colspan="2">소하천명</td><td colspan="4">죽양2소하천</td></tr>
<tr><td rowspan="4">공사
(점용·사용) 개요</td><td>위치</td><td colspan="4">광양시 옥곡면 수평리 641번지 외 9필지</td></tr>
<tr><td>면적</td><td colspan="2">약 3,357㎡</td><td>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td><td>㎡</td></tr>
<tr><td>기간</td><td colspan="4">당초: 2018. 12. 24. ~ 2021. 12. 23.
연장: 2018. 12. 24. ~ 영구</td></tr>
<tr><td>목적 및 사유</td><td colspan="4">공작물 설치(국사봉권역 단위정비사업 다목적 광장 및 계곡정비)</td></tr>
</table>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